

(조례안-참조1)

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11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1년 11월 일

제출자 : 성남시의회의장 의장

1. 제안이유

행정자치부 운영13130-529(2001.7.11)호 및 경기도 기획13130-11531(2001.7.14)와 행정자치부 운영13130-657(2001.8.16)호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과반수 확보토록 지시되어 동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)①항 중 ‘의회운영위원회위원’을 삭제하고 ‘부의장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인, 교수 2인, 시민단체 2인, 의회사무국장’을 삽입함.

3. 관련법규

-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
- 행정자치부 운영13130-529(2001. 7. 11)공문
- 행정자치부 운영13130-657(2001. 8. 16)공문

신 · 구 조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	제4조(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은 부의장,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2인, 교수2인, 시민단체 2인,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

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

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‘의회운영위원회 위원’을 삭제하고 ‘부의장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인, 교수 2인, 시민단체 2인, 의회사무국장’을 삽입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